

강원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강원도의회 제303회 임시회(9.2.~9.10.)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03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16건

상임위원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2021. 09. 10.)
기획행정위원회 (4)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순성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유선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태경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	윤석훈 의원	수정가결
사회문화위원회 (5)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병헌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형원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미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남상규 의원	원안가결
농림수산위원회 (3)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신명순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호진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윤석훈 의원	수정가결
교육위원회 (4)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원태경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태연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김혁동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영미 의원	원안가결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03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1. 09. 10.(금)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단,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0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 공동발의 : 김진석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남상규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4),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3),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주대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속초1), 한창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1)

강원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토론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사업,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독도교육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권순성 의원



김진석 의원



김혁동 의원



남상규 의원



박윤미 의원



조성호 의원



주대하 의원



한창수 의원

▣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공동발의 :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도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경우에 인증서를 수여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강원도(이하 “도” 라 한다)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혜택 부여할 수 있고,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성실납세자에게 부여되는 혜택뿐만 아니라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도 홈페이지나 도가 발행하는 홍보물을 활용하여 유공납세자임을

홍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유선 의원



윤석훈 의원



허민영 의원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원태경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3)
- 공동발의 :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양구), 주대하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속초1)

강원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여 안전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강원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는 재난 관련 자료 조사·분석 및 지표 산출, 지역 사회 안전도 진단, 도민의 안전 의식·안전사업 요구도 조사, 도민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재난관리·안전관리 관련 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태경 의원



김규호 의원



주대하 의원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

- 대표발의 :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평창1)
- 공동발의 : 박운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3)

도민의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이 발의됐다. 도 명예소방관 위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방본부장은 강원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소방관을 위촉하는 경우에 소방본부의 각 과장급 이상 직위자 또는 소방서장이 추천서와 적격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명예소방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명예소방관은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및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하고, 소방본부장은 명예소방관의 임무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윤석훈 의원



박운미 의원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이병헌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 공동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4),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며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도내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써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를 인정해야 하고, 보유자 및 보유단체와 전승교육사는 해당 전승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전승지원, 교육지원 및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병헌 의원



권순성 의원



김병석 의원



조성호 의원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김형원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동해2)

■ 공동발의 :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양구),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의원장 · 더불어민주당 · 양양), 김상용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삼척1), 이병헌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원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화재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금연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③ 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도지정문화재로, 향토문화 보존상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하여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도등록문화재에 대해 정기조사를 하고, 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김형원 의원



김규호 의원



김정중 의원



김상용 의원



이병헌 의원

▣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 공동발의 : 김진석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장덕수 의원(사회문화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정선1)
남상규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4),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주대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속초1)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본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 수당의 지급을 정지해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았던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각 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3호 ·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권순성 의원



김진석 의원



장덕수 의원



남상규 의원



정수진 의원



조성호 의원



주대하 의원

▣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고독사를 예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관, 단체 및 시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 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대표발의 : 남상규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4)
- 공동발의 :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2), 원태경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3),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시설관리인을 포함함)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시설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 시·군과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다.



남상규 의원



신명순 의원



원태경 의원



정유선 의원

■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대표발의 :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2)
- 공동발의 :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양양), 남상규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4)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도 먹거리 기본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먹거리계획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강원도 먹거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명순 의원



김정중 의원



남상규 의원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위호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4)
- 공동발의 :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양양),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2),
 심상화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1),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주대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속초1),
 한금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철원2)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연안지킴이를 위촉하여 연안의 보전·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연안지킴이를 추천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연안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활동을 위해 시·군 및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위호진 의원



김정중 의원



신명순 의원



심상화 의원



윤지영 의원



정수진 의원



주대하 의원



한금석 의원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 공동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매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해당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및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홍보·지원할 수 있다.



윤석훈 의원



권순성 의원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원태경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3)

■ 공동발의 : 남상규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4),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학생들에 대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육성에 대한 지원,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전시회·발표회 등 각종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우수한 지식재산 사례 발굴·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원태경 의원



남상규 의원



허민영 의원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반태연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3)

■ 공동발의 : 최재연 의원(교육위원장 · 국민의힘 · 철원1),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박상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삼척2),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학교체육의 진흥과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운영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체육활동의 확대 및 지원, 우수한 체육 인재의 육성 및 지원 및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체육 종목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반태연 의원



최재연 의원



김혁동 의원



박상수 의원



허민영 의원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 공동발의 :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이상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1)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학도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학도병 선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도병 선양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관련 교사 연수,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 및 학교 내 학도병 선양 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김혁동 의원



김경식 의원



이상호 의원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 및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장이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확대 운영 및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